

# IMO 제17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17)

## 참석결과 보고

### I. 일반사항

- 회의명 : IMO 제17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17th session)
- 기간/장소 : '09. 4. 20~4. 24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석자 : 검사제도팀 최기중 선임검사원

### II. 의제목차

1. [의제 7] 항만국 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2. [의제 11]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
3. [의제 13]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4. [의제 14] RO 코드의 개발

###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 의제 7 항만국 통제(PSC)의 조화로운 시행

#### 1. 의제 개요

- 동 의제는 각 항만국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PSC 협의체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는 PSC 활동에 대한 조화로운 시행을 위하여, PSC 관련 범지역적 활동 진행 사항 및 각 MoU별 PSC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를 개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통신작업반이 시행한 발효된 강제협약 내용 중 항만국통제 활동 관련 사항, PSC 검사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행동(청렴, 전문성, 책임)을 언급한 “항만국통제 활동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코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를 요청
- PSC MoU/Agreement 사무국과 정보 센터 이사의 제 4차 IMO 워크숍에서 논의된 각 PSC 협의체의 PSC 활동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 보고 형식 및 관련 내용의 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PSC 절차 통합본 초안(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을 승인을 전문위원회에 요청함

#### 2. 주요쟁점별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 2.1 PSC 관련 절차

##### □ 관련문서

- FSI 17/7(호주) : 통신작업반 보고서
- FSI 17/7/1(사무국) : PSC MoU/ Agreement 사무국과 정보 센터 이사의 제4차 IMO 워크숍 결과
- FSI 17/7/7(Paris MoU) : 선박의 방오 도료시스템(AFS) 검사 관련 항만국 통제 검사관을 위한 예비 지침서
- FSI 17/7/8(Paris MoU) : 항만국통제 검사

중 시행하는 소화, 퇴선 및 손상 관리 훈련 절차

○ FSI 17/7/10(사무국) : BLG 13차 회의 결과

□ 논의 경과

가. PSC 통신작업반 보고서

○ FSI 16차 회의 이후 구성된 PSC 관련 통신작업반(호주 의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22개국의 대표 참여)의 회기간 작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작업반의 작업범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당 내용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승인됨

- PSC MoU/Agreement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의 제4차 IMO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사항에 대한 고려

가) 벌크선 정의에 대한 해석

- 벌크선의 정의 해석과 가끔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XII/1.1과 Ch.II-2에 따라 벌크선으로 결정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SOLAS 적용 지침을 언급한 MSC.Res.277(85)을 모든 PSC 협의체 회원에게 가능한 빨리 배포하고, PSCO에게는 관련 증서를 확인하여 선박 종류를 파악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사항에 작업반 참가자가 동의함

나) 빌지 선외배출 밸브의 Blanking

- 항만에서의 빌지 배출 파이프의 Blanking이 SOLAS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언급된 MSC-MEPC.4/Circ.3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PSC 협의체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제안사항에 작업반 참가자가 동의함

- 통신작업반 보고서(FSI 17/7) 및 Paris MoU에서 개발한 소화, 퇴선 및 손상관리 훈련 절차에 대한 지침(FSI 17/7/8)을 고려하여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의 추가 검토, 개정 및

완료 시기 제공

가)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의 추가 검토, 개정

- 단어의 통일성, 참조문서 재확인, PSC 보고서 형식 표준화, 내용 추가 및 본선 보관 기간 확인, 그리고 IACS에서 전달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 현재 결의서가 매 2년마다 개정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의서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논의됨. 사무국은 좀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타(별도)문서(예, MSC-MEPC 회람문서)에 포함시켜 개정을 용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의서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신작업반에 조언하여 해당 문서가 FSI 18차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IMO 관련 단체에게 PSC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지침이나 코드, 그리고 이러한 문서의 최신화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고, 기타 IMO 관련 단체가 PSC 관련 협약의 추가 개발이나 개정을 고려할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전달하여 최초 작업부터 전문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PSC MoU/Agreement 사무국과 정보센터 이사의 제4차 IMO 워크숍 결과문서(FSI 17/7)의 Annex 2를 고려하여, PSC 활동결과 요약에 위한 PSC 협의체 제공 정보의 보고 형식 및 관련 문구 추가 개발

- PSC 협의체에서는 상호간의 협력을 확인하면서, 4차 PSC 워크숍에서 논의된 점검 데이터, 선종별 점검 데이터 및 결함별 점검 데이터 형식에 따른 PSC 정보 제공

에 동의하고, 실제 해당 형식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로 함

- 사무국에서는 각 PSC 협의체간 협력을 돕고 업무를 중재하여, 정보 보고 형식 개발에 노력할 예정임
- 정보보고 형식의 개발은 향후 PSC 워크숍의 지속적인 의제가 될 것이며, PSC 워크숍의 매년 개최는 일부 국가의 예산 관련 반대로 결정되지 않음
- 제공된 PSC 관련 정보는 사전 협의 없이 IMO에 의해 서로 합쳐지지 않음

나. 선박의 방오도료시스템(AFS) 검사 관련 항만국통제 검사관을 위한 예비지침

- 방오도료시스템의 샘플링, 분석, 결합 및 위반에 대한 시행조치 시행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내용을 포함한 Paris MoU의 선박의 방오도료시스템(AFS) 검사 관련 항만국통제 검사관을 위한 예비 지침(FSI 17/7/7)에 대하여

- 작업반의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이 PSC 절차 문서에 반영되기 전에 '선박의 방오도료시스템(AFS) 검사 관련 항만국통제 검사관을 위한 지침' (Res.MEPC.105(49))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파악하고, MEPC 59차 때 해당 내용이 새로운 우선 항목으로서 작업계획에 포함되고 FSI 18차 예비의제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MEPC의 동의를 요청함

다. 항만국통제 검사 중 시행하는 소화, 퇴선 및 손상관리 훈련 절차

- DE 21에서 동의되어 MSC 86에 제출할 예정인 SOLAS Reg.III/19.3.3.3에 따른 퇴선훈련 중 구명정 진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MSC 초안(DE 52/21)을 상기하고,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의 참조를

위하여 Paris MoU에서 개발한 소화, 퇴선 및 손상관리 훈련 절차에 대한 지침(FSI 17/7/8)이 제출되었음

라.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에 따른 PSC 지침

- 산적, 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3차 회의에서 승인된 후 검토를 위해 전달된 MARPOL 부속서 VI에 따른 PSC 지침(Res.MEPC.129(53)) 개정 문구에 대하여, 작업반에서는 IACS의 수정 제안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초안을 MEPC 59에 보고하기로 함

마. 기름기록부의 사용에 대한 임시 지침

- MEPC 58차의 요청에 따라, 기름빌지저장 탱크 및 가열된 슬러지의 잔존량에 대한 자율기재 관련 기름기록부 사용의 임시지침(MEPC.1/Circ.640)에 대한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 반영을 작업반에서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반영은 필요 없으나 항만국통제관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기로 함. 또한 ICS에서 MEPC.1/Circ.642도 참조되어야 함을 언급함

#### □ 주요 결정사항

- 작업반 논의 결과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작업범위를 정함
  -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의 추가 검토 및 개정
  - PSC 절차(결의서 A.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의 내용 중 결의서에 남겨질 부분과 기타(별도)문서(예, MSC-MEPC 회람문서)에 포함될 기술적인 부분을 식별
  - Paris MoU에서 제출한 FSI 16/8를 기초로, 선박평형수 샘플링(G2) 지침(MEPC 58/23, Annex 3)을 참조하여 2004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에 따른  
항만국 통제지침 개발

- 선박평형수 성능기준(D-2)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 시 2004 벨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의 준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정조치 고려
- 2004 벨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 관련 지침들의 다양한 채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조언할 것
- FSI 18차에 문서 제출

## 2.2 PSC 정보의 투명성 및 조화

### □ 관련 문서

- FSI 17/INF.9(사무국) : 새로운 협약요건 목록
- FSI 17/INF.20(BIMCO) : 전 세계적인 PSC 이행 관련 문제점
- FSI 17/INF.21(EQUASIS) : EQUASIS 정보 시스템

### □ 논의 경과

- 가. 전 세계적인 PSC 이행 관련 문제점
-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610명 (199척, 3,833번의 PSC 점검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은 결과, 15%는 기준미달의 PSC 점검을 경험하였고, 선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부패한 PSCO에게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BIMCO의 문서(FSI 17/ INF. 20)가 전문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LEG에도 제출되어 검토가 되었음
  - BIMCO의 제출 문서에 대하여 Plenary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됨
    - Vanuatu는 실제 과중한 벌금을 부여받고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즉각 출항정지가 되는 불법적인 출항정지를 경험한 자국 선박의 예를 들면서, 항만국 통제 결과 출항

정지를 부여 시 기국에 출항정지 통보를 즉각적으로 하고, 해당 결함이 안전 및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시정조치 전 출항 허가를 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입항 제한을 취할 수 있도록 각 PSC 협의체가 회원국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주길 요청함

- Abuja MoU에서는 최근 절차 및 절차의 조화와 관련된 회의에서 감사료, 벌금, 부패 보고사례에 대한 조사 실적을 언급함
-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언급하여 문서를 부정하는 일부 국가가 있었던 반면, 호주, 바하마, 터키 등은 해당 문서의 증거자료 추가,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함
- 의장은 작업반 및 통신작업반에 해당 내용의 검토를 지시하려고 했으나 이미 과도한 작업 업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작업 범위에 넣지 않고, 차기 회의 시 관련된 문서가 제출되면 금번 Plenary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나. EQUASIS 정보 시스템

- FSI 16차에서 GISIS와 EQUASIS간의 전 세계 PSC 정보 교환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으며, 사무국에게 관련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EQUASIS 관리기관(MU)의 대표를 차기회의에 초청함
- EQUASIS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무국 제출 문서(FSI 17/INF.21)를 통해 17, 18차 EQUASIS 감독 위원회 회의 및 14차 EQUASIS 수정 이사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언급

- 아 래 -

- 새로운 PSC 협의체가 자료 제공자로서 가입하면, IMO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의 정보가 EQUASIS를 통해 제공될 것임

- PSC 관련자료 제공자로서 Indian MoU와의 최종 협의가 완료되고, Vina del Mar와는 관련 내용을 협의 중임
  - 2009년 1월 1일 이후 MU는 EMSA 건물로 이전하고 인원을 감축함. 반면 EQUASIS 정보 시스템(DSI)은 기존의 프랑스, Saint-Malo에 있음
  - PSC 관련 GISIS 모듈을 돕기 위하여 MU는 IMO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예정이며, IMO 기술자의 DSI 방문을 허용함
  - EQUASIS의 GISIS 개발 참여는 정보의 취합과 제공에 대한 아이디어 및 경험의 교환에 국한되어 있으며, EQUASIS에서 GISIS로의 정보 제공은 현재 자료 제공자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
- 다. 새로운 협약요건 목록
- PSC 관련 결함의 코드화 및 추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의 사용을 위하여 새로운 협약요건 목록 문서(FSI 17/INF.9)를 사무국에서 제출함
- 주요 결정사항 : 전세계적인 PSC 이행 관련 문제점
- 의장이 작업반 및 통신작업반에 해당 내용의 검토를 지시하려고 했으나 이미 과도한 작업 업무가 있음을 고려, 작업반의 작업 범위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음
- ### 2.3 각 MoU별 PSC 활동 진행 사항 검토
- 관련 문서
- 가. PSC 협의체 지역간 활동
- FSI 17/INF.6(Paris, Tokyo MoU) : 제2차 지역간 항만국 통제 행정 회의 관련 최신 시행사항
  - FSI 17/INF.8(사무국) : 지역별 PSC 협정 진행 보고서
  - FSI 17/INF.5(Paris, Tokyo MoU, 미국) : Paris, Tokyo MoU와 미국에 의해 결정된 Targeted 기국
- 나. 집중점검제도(CIC) 시행 결과에 대한 검토
- FSI 17/7/3(흑해 MoU) : 흑해 MoU의 2007 ISM 집중 점검 캠페인(CIC) 보고서
  - FSI 17/7/5(Paris MoU) : Paris MoU의 2007 ISM 집중 점검 캠페인(CIC) 보고서
  - FSI 17/7/6(Paris MoU) : Paris MoU의 2008 항해안전(SOLAS 5장) 집중 점검 캠페인(CIC) 예비 발견사항
  - FSI 17/7/9(Tokyo MoU) : Tokyo MoU의 2007 ISM 집중 점검 캠페인(CIC) 보고서
  - FSI 17/INF.15(흑해 MoU) : 흑해 MoU의 항해안전 집중 점검 캠페인(CIC) 예비 결과
  - FSI 17/INF.19(Indian MoU) : Indian MoU의 2008 항해안전(SOLAS 5장) 집중 점검 캠페인(CIC) 예비 발견사항
- 다. 각 MoU별 연차보고서 및 통계에 대한 검토
- FSI 17/INF.2(미국) : USCG 2008 PSC 보고서
  - FSI 17/INF.3(Paris MoU) : Paris MoU 2007 연차 보고서
  - FSI 17/INF.4(Paris MoU) : Paris MoU 2007 통계 분석
  - FSI 17/INF.7(Abuja MoU) : Abuja MoU 2008 연차보고서
  - FSI 17/INF.12(Vina del Mar) : Vina del Mar 2008 PSC 보고서
  - FSI 17/INF.16(흑해 MoU) : 흑해 MoU 2008 PSC 보고서
  - FSI 17/INF.17(Indian MoU) : Indian MoU 2008 연차 보고서
  - FSI 17/INF.18(Indian MoU) : Indian MoU 2008 통계 분석

□ 논의 경과

○ 현재 활동중인 9개의 지역별 PSC 협의체는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PSC 활동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Paris, Tokyo, 흑해, 인도양 MoU는 '09. 9. 1~11. 30까지 집중 점검 캠페인(CIC)을 시행할 예정임을 문서를 통해 언급함

- Paris MoU - 1982. 7. 1일 채택 / 27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Vina del Mar(남미 협정) - 1992. 11. 5일 서명 / 13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Tokyo MoU - 1993. 12. 2일 서명 / 18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Caribbean MoU - 1996. 2. 9일 서명 / 24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Mediterranean MoU - 1997. 7. 11일 서명 / 11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Indian Ocean MoU - 1998. 6. 5일 서명 / 18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Abuja MoU - 1999. 10. 22일 서명 / 19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Black Sea MoU - 2000. 4. 7일 서명 / 6개 회원국 (IMO 정부간 단체)
- Riyadh MoU - 2004. 6. 30일 서명 / 6개 회원국  
(26차 총회에서 IMO 정부간 단체로의 최종승인을 기다림)

○ Paris, Tokyo MoU 및 USCG에서 발표한 targeted 기국 목록(FSI 17/INF.5)의 내용 및 Paris 및 Tokyo MoU의 제2차 지역간 항만국 통제 행정 회의 관련 최신 시행사항(FSI 17/INF.6)을 주지함

□ 주요 결정사항

○ Paris, Tokyo MoU 및 USCG에서 발표한 targeted 기국 목록(FSI 17/INF.5)과 관련

하여 전문위원회는 PSC 점검 실적이 향상된 기국이 있는 경우 이행된 대책 및 관련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해당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권고함

의제 11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

1. 의제 개요

- FSI의 장기 지속 의제인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997(25))의 검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협약이 시기 적절하게 검사 지침에 반영되도록 통신작업반에서 수행한 지침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임
- 또한, 검사 지침과 관련하여 다른 회의 또는 회원국에서 제기한 문제(아래 상세 참조)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임

2. 주요쟁점별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2.1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A.997(25))의 검토

□ 관련문서

- FSI 17/11 (프랑스)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A.997(25))의 검토 및 IMO 강제 협약(Res.A.996(25)) 이행 코드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제1부)(부속서 1, 3, 4)
- FSI 17/11/1 (사무국): 새로운 규정 목록(FSI 16 이후 새로 채택된 규정 목록)
- FSI 17/11/2 (사무국): BLG 13 회의 결과
- FSI 17/INF.9 (사무국): 새로운 규정 목록(FSI 16 이후에 새로 채택된 규정 목록)
- FSI 17/INF.11 (사무국) : 결의서 A.997(25)의 편집을 위한 검토

## □ 논의 경과

- FSI 16(2008년 6월)에서는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범위를 가진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였음
  - FSI 16/WP.2(“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를 위한 작업반 보고서)의 부속서 1, 2를 바탕으로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에 대한 개정(안) 추가 개발 및 관련 개정 협약의 반영 현황을 FSI 17에 보고
  -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에 대한 개정(안) 추가 개발 및 FSI 16/11(“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 보고서)과 FSI 16/INF.4(강제 협약의 개정 목록)를 바탕으로 동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협약 개정사항 목록을 추가 식별하여 FSI 17에 보고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A.997(25)) 또는 “선박의 AFS 검사 및 증서 발급에 관한 지침(Res.MEPC.102(48))”에의 추가를 고려한 AFS 관련 검사 지침 초안 검토 후 FSI 17에 보고
  - 증서 관련 협약 개정안의 발효 이후 기존 증서 교체 시기에 대한 지침을 정한 MSC/MEPC 결의서 또는 회람 초안 준비 후 FSI 17에 보고
- 회기간 통신작업반은 상기 작업 범위에 따라 ‘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997(25))에 대한 개정안’ 및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하였고, FSI 17/11의 부속서 1 및 2로 각각 제출함
- 사무국은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과 관련하여 통신작업반에서 다루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검토

하고 그 검토결과를 의제문서 FSI 17/INF.11로서 제출하였음

- BLG 13(2009년 3월)에서는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 하에서의 HSSC 검사 지침(Res.MEPC.128(53))”에 대한 개정 MEPC 결의서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동 MEPC 결의서 초안을 FSI 17에 검토를 위해 전달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사무국은 동 결의서 초안을 FSI 17에서의 검토를 위해 FSI 17/11/2로서 제출함

## □ 주요 결정사항

- 본회의장에서는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 마무리를 위하여 작업반에 관련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작업반에서는 이에 따른 논의가 이뤄짐. 전문위원회에서는 작업반의 논의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A.997(25))
    - 작업반은 FSI 17/11의 부속서 1, FSI 16/WP.2의 부속서 1 및 2, FSI 17/INF.9, FSI 17/INF.11 문서들을 검토한 후, Res.A.997(25)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동 개정안은 MSC 86 및 MEPC 59의 승인을 거쳐 A 26에서 채택 예정임)
    - 또한, 전문위원회는 매 홀수 총회 때는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이 통합본으로서 승인이 되고, 매 짝수 총회 때는 동 검사 지침의 개정안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함. 단, 매 짝수 총회 때는 동 검사지침의 통합본을 IMO 웹사이트에 제공하기로 함
  - 로로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에 대한 선저 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
    - DE 52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

반은 여객선의 선저 외판에 대한 검사 관련 사항인 Res.A.997(25)의 5.10항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5.10항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 전문위원회는 아래의 5.10항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A 26 채택을 위한 Res.A.997(25)의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MSC 86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 ]으로 남겨둠  
 [주관청에 의해 허가될 경우, 여객선(로로 여객선 제외)의 선저 외판 검사를 위한 입저 검사의 최소 회수는 매 5년마다 두 번에서 매 5년마다 한번으로 줄일 수 있음\*. 이 경우 연속된 입저 검사의 간격은 60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기구에 의해 개발되어질 지침에 따름
- MARPOL 부속서 VI 하에서의 HSSC 검사 지침 (Res.MEPC.128(53))에 대한 개정
  - 문서 작업을 줄이고 일관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작업반은 BLG 13에서 작성한 초안의 “GENERAL”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문위원회는 작업반에서 논의된 ‘MARPOL 부속서 VI 하에서의 HSSC 검사지침 (Res.MEPC.128(53))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동 개정안을 포함하는 MEPC 결의서 초안은 MEPC 59에서 채택될 예정임
- 선박에서의 AFS 검사 및 증서발급(Res.MEPC.102(48))에 대한 개정
  - 작업반은 Res.MEPC.102(48)에 대한 개정을 위해 FSI 17/11의 부속서 4를 검토함. 하지만, 동 결의서 개정 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신작업반에서 더 상세한 논의를 하기로 함.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작업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 2004 BWM 협약과 관련된 검사 지침
  - 전문위원회는 HSSC에 따른 BWM 협약에 대한 임시 검사 지침인 BWM.2/Circ. 7의 내용에 대하여 회원국 및 모든 관련 업계가 주목하도록 제안함
- 전문위원회는 HSSC에 따른 검사 지침 (Res.A.997(25))의 검토 및 IMO 강제 협약 (Res.A.996(25)) 이행 코드의 개정에 대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작업 지침(terms of reference)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로 함
  - FSI 17/11의 부속서 3, FSI 17/INF.9 및 FSI 16/WP.2의 부속서 2를 바탕으로 하여, HSSC에 따른 검사지침에 영향을 주는 ‘IMO 협약에 대한 개정들’을 식별하고 이를 FSI 18에 보고
  - FSI 16/INF.4 및 FSI 17/INF.10을 바탕으로,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영향을 주는 ‘IMO 협약에 대한 개정들’을 식별하고 이를 FSI 18에 보고
  - FSI 17/WP.2의 부속서 1 및 Res.A.997(25)를 바탕으로 하여, A 27의 채택을 위해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통합본을 제출할 목적으로, 동 검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하여 FSI 18에 보고
  - FSI 17/WP.2의 부속서 4 및 Res.A.996(25)를 바탕으로 하여, A 27의 채택을 위해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의 통합본을 제출할 목적으로, 동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하여 FSI 18에 보고
  - FSI 17/11의 부속서 4를 바탕으로, AFS 협약 하에서의 검사지침(Res.MEPC. 102(48))에 대한 개정안 개발하여 FSI 18에 보고

2.2 증서 관련 협약 개정안의 발효 이후의 기존 증서 교체시기에 대한 지침에 관한 MSC/MEPC 결의서 또는 회람 초안 준비

□ 관련문서

- FSI 17/11 (프랑스)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A.997(25))의 검토 및 IMO 강제 협약(Res.A.996(25)) 이행 코드의 개정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부속서 5)

□ 논의 경과

- FSI 16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은 MEPC 54에서 동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다룬 적이 있으며 개정 MARPOL 부속서 I 발효 전에 발행된 IOPP 증서 및 추록의 유효 기간에 대하여 언급한 MEPC.1/Circ.513을 승인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함. 통신작업반은 이와 관련하여 MSC-MEPC Circular 초안을 작성하여 FSI 17에 통신작업반 보고서(FSI 17/11)의 부속서 5로 제출함
- MSC-MEPC Circular(증서 관련 개정이 발효된 후에 발행되는 증서에 의한 기존 증서의 교체 시기에 대한 지침) 초안 내용 - ILL, SOLAS, MARPOL 및 동 협약하에서 강제화된 코드등과 같은 모든 IMO 협약에서 증서 관련 개정이 발효된 후에 발행되는 증서에 의한 기존 증서의 교체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음
  - (1) 선박이 새로운 요건을 따라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증서는 만료일까지 다시 발행될 필요가 없음
  - (2) 선박이 새로운 요건을 따라야 되는 경우, 증서는 그러한 새로운 요건의 발효일 이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검사에 재발행되어야 함
  - (3) 선박이 추가 검사를 수반하는 개조가

이뤄질 경우, 증서는 재발행되어야 함

- 전문위원회는 작업반에 상기 MSC-MEPC Circular 초안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함

□ 주요 결정사항

- 작업반에서는 상기 MSC-MEPC Circular 초안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의 변경 없이 동의하였고, 전문위원회는 작업반의 MSC-MEPC Circular 초안에 대하여 동의함 (동 Circular 초안은 MSC 86 및 MEPC 59에서 승인 예정임)

의제 13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1. 의제 개요

- FSI의 장기 지속 의제인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의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협약의 시기 적절한 코드에 반영을 위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수행한 지침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임
- 또한, 코드 및 회원국 감사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아래 상세 참조)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임

2. 주요쟁점별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2.1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의 개정 검토

□ 관련문서

- FSI 17/11(프랑스)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 (Res.A.997(25))의 검토 및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의 개정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제1부) (부속서 2)
- FSI 17/13(사무국) : 새로운 규정 목록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협약 개정사항 목록)

- FSI 17/INF.10(사무국) : 새로운 규정 목록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협약 개정사항 목록)

□ 논의 경과

- FSI 16(2008년 6월)에서 구성된 회기간 통신작업반은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대한 개정(안) 추가 개발 및 동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협약 개정사항 목록의 추가 식별을 지시받음
- 통신작업반은 관련 IMO 협약의 개정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FSI 17에 통신작업반 보고서(FSI 17/11)의 부속서 2로 제출함
- 또한, 차후에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에 대한 적절한 개정사항 준비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동 코드의 개정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FSI 16 이후에 채택된 강제 협약의 개정사항들의 목록을 FSI 17에 의제 문서 FSI 17/13 및 FSI 17/INF.10으로 제출함

□ 주요 결정사항

- 작업반은 FSI 17/11의 부속서 2, FSI 17/WP.4를 검토 후, 동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동 개정안은 MSC 86 및 MEPC 59의 승인을 거쳐 A 26에서 채택 예정임)
- 또한, 전문위원회는 매 홀수 총회 때는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가 통합본으로서 승인이 되고, 매 짝수 총회 때는 동 코드의 개정안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함.

단, 매 짝수 총회 때는 동 코드의 통합본을 IMO 웹사이트에 제공하기로 함

2.2 FPSO 및 FSU에 대한 IMO 협약의 적용 여부 검토

□ 관련문서

- FSI 17/13/1 (중국): FPSO 및 FSU에 대한 IMO 협약의 적용

□ 논의 경과

- MSC 85는 대부분의 경우 FPSO 및 FSU의 운항은 SOLAS 협약(ISM 코드 포함), LL 협약 및 STCW 협약 등의 요구사항들을 기본으로 국내법에 의해 수립된 안전 체제에 의해 커버되고 있음을 주목함
- MSC 85는 FSI 17에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해상인원(marine staff)의 포함과 관련한 MSC-MEPC 회람 초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함
- 중국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FSI 17에서의 검토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해상인원(marine staff)의 포함” 관련 회람 초안을 작성
  - MSC 85 결정사항
  - 두개의 산업계 지침 : OCIMF에 의해 개발된 FPSOs에 대한 자격 인증 지침 및 OGP에 의해 개발된 FPSOs과 관련된 해상 위험 관리를 위한 지침
  - MSC 85/10/1(파나마, IACS, IADC, ITF, OCIMF 및 OGP): IMO 협약들의 FPSOs 및 FSUs에의 적용 가능성
  - Res.A.891(21)의 이동식 해상 구조물 (Mobile Offshore Units)의 인원의 훈련에 관한 권고
  - 동 주제에 대한 관련 전문위원회의 결정 사항

- FPSOs/FSUs의 안전 및 오염방지에 대한 현 산업계 관행을 반영하는 기타 다른 요소들 (예, 비상 대응 등)
- 모든 형태의 FPSOs/FSUs에 대하여 다양한 IMO 협약을 전반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서로 다른 형태의 FPSOs/FSUs에 대한 개별적인 협약 또는 지침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SOLAS 협약(ISM 코드 포함), LL 협약 및 STCW 협약 등의 관련 협약들과 결의서 및 산업계 지침들을 기초로 한, FPSOs/FSUs에 대한 설계, 구조, 선원의 자격, 인원배치, 관리, 원위치로부터 벗어난 운항, 오염방지, 보안, 비상 대책, 등록,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관련 국내법을 개발하도록 요구됨

□ 주요 결정사항

- 전문위원회는 중국이 제출한 문서 FSI 17/13/1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해상인원(marine staff)의 포함 관련 회람 초안)의 검토 후, 작업반에 동 의제 문서 및 파나마 등이 MSC 85에 제출한 MSC 85/10/1(IMO 협약들의 FPSOs 및 FSUs에의 적용 가능성)에 포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MSC-MEPC Circular 초안을 개발하라고 지시함
- 작업반에서는 소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문서들을 토대로 관련 MSC-MEPC Circular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Circular 초안의 제목을 '안전, 보안 및 환경 보호 규정들의 FPSOs 및 FSUs에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 결정함
- 전문위원회는 작업반에 의해 제안된 MSC-MEPC Circular 초안에 대하여 동의함 (동 Circular는 MEPC 59 및 MSC 87에서 승인 예정임)

2.3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통합 감사 기록 요약 보고서에 대한 검토

□ 관련문서

- FSI 17/13/2 (프랑스) :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의 개정(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의 검토 및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Res.A.996(25))의 개정에 대한 통신 작업반 보고(제2부))

□ 논의 경과

- FSI 16은 통신작업반에게 통합 감사 결과 요약보고서의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1차 통합 감사 결과 요약보고서(A 25/8/2)와 FSI 17 전에 발행된 통합 감사 결과 요약보고서를 이용해 개발된 방법론으로 분석, 그 결과를 요약 및 적절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라고 지시. 이러한 분석 방법론의 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회원국과 IMO에게 발견사항들(findings)이 재발생되는 영역에 대해 그 근본원인(under-lying causes)과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식별하는 등의 피드백을 제공
- 강제 협약의 회원국에 의한 이행의 유효성에 대한 피드백을 IMO에 제공
- 기술협력활동이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의 식별
- 통신 작업반은 통합 감사 결과 요약보고서 안의 정보들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견사항, 모범사례 및 이행의 유효성의 분석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또한, 현재 목표에 부합한 효과적인 분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에 부가하여 추가의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FSI 전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함

- 향후 요약보고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합 감사 결과 요약보고서 및 관련 회람 문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발견사항(generic findings)의 목록을 개발
- 강제 협약의 이행의 유효성 및 기술협력이 적용되어야 될 상황들을 정량화하는 기준을 개발

□ 주요 결정사항

- 본회의장에서는 상기 통신 작업반의 요청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터키는 기계적인 방식(machine based approach)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 개발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람에 의한(human based approach)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진행 방향 등이 잘 정해지면 사무국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뉴질랜드는 통신작업반이 제안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generic approach)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서술적인 접근 방법(narrative approach)을 제안함
  -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이 '발견사항, 모범사례 및 이행의 유효성 분석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관련한 사전 연구'를 하도록 하고, 동 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초안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공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이에 동의함
- 상기 지침 초안 작성을 위한 DG가 구성되었으며, DG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전 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동 지침 초안에 대하여 동의함
  - 발견사항, 근본원인, 모범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사무국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발견사항은 관찰사항, 부적합사항, 긍정 개발(positive development) 영역, 추가 개발(further development) 영역을 포함함
-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긍정 개발 영역 및 추가 개발 영역은 IMO 강제 협약 이행 코드의 각파트에 대하여 명확히 나타나야 함
- 재발생되는 발견사항 영역들은 감사자 매뉴얼의 6편에서 9편에 나와 있는 특별 의무사항들을 고려하여 식별되어야 함
- 재발생되는 발견사항들의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과 관련한 감사표준의 해당 규정이 연결되어야 하며 분석되어야 함
- 재발생되는 발견사항에서의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의 수가 분석되어야 함
- 추후의 통합 감사 요약 보고서는 근본 원인의 상세가 포함되어야 함
- 회원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효과적으로 분석되도록 전형적인 근본 원인의 목록을 개발하여야 함
- 모범사례영역은 긍정 개발 영역 안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이행의 유효성에 대한 고려시, 사무국은 다음의 지침들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이행의 유효성은 강제 IMO 협약의 이행 및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 각각의 유효성으로서 해석되어야 함
  - 이행의 유효성 분석은 재발생되는 발견 사항 영역에 기본을 두어야 함
  - 분석은 강제 IMO 협약의 이행에 대한 유효성, 회원국들의 코드 적용, IMO의 규정 제정에 대한 유효성 및 적정성 관련 피드백을 기구에 제공하여야 함
- 사무국은 ICAO와 같은 다른 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서식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 보여주기 위한 서식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서식들을 통합 감사 요약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적절히 보여주는데 이용하여야 함
- 이후 분석 수행자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사무국은 작업 부담, 이용 가능한 자원, 기타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를 제공하여야 함

의제 14	RO 코드의 개발
-------	-----------

### 1. 의제 개요

- 국제 협약 등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현재 그러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써 국가는 인정 기관(RO)에 해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RO의 활동을 감독하여 해당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이러한 RO에 대해 협약 상 요구되는 조건은 SOLAS, MARPOL, ILL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전체 요건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님
-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하여, MSC 84에서 오스트리아 등 EC 국가들은 인정기관(Recognized Organizations, ROs)에 대한 코드의 개발을 FSI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제안(MSC 84/22/13)하였으며, MSC84는 동 작업계획을 FSI의 2010년 완료 목표로 채택함

### 2. 주요쟁점별 논의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 2.1 RO 코드의 개발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검토

##### □ 관련문서

- FSI 17/14 (파나마): RO 코드의 개발

- FSI 17/14/1(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RO 코드 개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
- FSI 17/14/2(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인트 키트 네비스) : 향후 작업에 대한 제안
- FSI 17/14/3(마셜 아일랜드) : 코드 개발의 구조 및 기본 원칙에 대한 제안
- FSI 17/14/4 (몽고) : RO 코드 개발에 제기되어야 할 요소들의 분석
- FSI 17/14/5 (투발루 및 키리바티) : RO 코드 개발에 제기되어야 할 요소들의 분석

##### □ 논의 경과

- FSI 17에서는 RO 코드 개발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문서들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FSI 17/14 (파나마)
    - MSC 84/22/13에서 EU 국가들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RO 코드의 목적은 자격이 있고 독립적인 감사자가 RO 코드와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도록 현행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데 있음. 이와 같은 제안은 다음의 문제점이 예상됨
- i)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감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주관청으로 하여금 그들의 법제도에 대한 상당한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것임. 또한, 각 국가의 법적 능력을 능가하는 초국가적인 단체 또는 협회의 생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스템과 국제협약

사이에 법적인 충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추가 비용 및 국가에 의해 위임된 기능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결의서 A.996(25), A.974(24), 739(18), 789(19) 및 SOLAS Reg.I/6과 충돌하게 될 것임

ii) 해당 RO에 대한 주관청의 권한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음

iii) 위임한 RO가 효과적으로 강제 IMO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경우,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 제도 하에서 수감한 국가들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게 됨

- RO 코드는, 관련 IMO 규정들의 조화되고 제도화된 적용을 위해 회원국들을 돕는 대신에, 비준된 국제협약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절차를 도입시키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임. 따라서, 파나마는 RO 코드 개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함

- FSI 17/14/1(유럽 연합(European Union) 국가들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RO 코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며, 동 작업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 구성을 제안

- 1 단계 : 현재 많은 IMO 협약들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현행 RO 관련 규정들을 한 코드에 모으고 이를 정리. 이는 유용한 검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정부대행 업무 위임의 모든 관련 영역이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게 되어 주관청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더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또한, 이는 현행 IMO 규정들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용이하게 될 것이며, 참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2 단계 : 모든 현행 관련 규정이 하나의 코드로 통합되고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는 중복되거나 쓸모없게 된 규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들에 대한 개정을 고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동 RO코드가 RO가 정부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만족해야 하는 강제 요건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원국들이 RO의 감사, 선택 및 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FSI 17/14/2(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인트 키트 네비스) : 나이지리아 등은 MSC 84/22/13에서 제안된 작업의제와 관련하여, RO 코드의 개발의 절대적인 필요성(compelling need)은 없어 보이긴 하나, RO 코드의 개발 작업계획의 목표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면, 이는 주관청이 다양한 IMO 강제 협약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RO와 관련된 기존 모든 강제 규정들을 하나의 IMO 코드로 취합
- RO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상응하는 RO에 의하여 만족하여야 되는 기준들을 명확히 식별

-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한 RO의 감사 체계의 개발

- 감사 기관의 지정(주관청에 의한 지정임)에 대한 지침 개발

- RO 감사 기관의 인증을 위한 체계, RO의 이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주관청 간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체계, RO가 수감해야 될 감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감사 기관 사용에 대한 체계 개발

- FSI 17/14/3(마셜 아일랜드) : 마셜 아일랜드는 현행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코드로 통합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유용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협약 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하나의 문서 안에 포함되어 기국 주관청 및 RO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아래와 같은 두 단계에 걸친 RO 코드 개발을 제안함

- 1단계 : RO의 이용 및 RO에의 위임과 관련한 IMO 협약상 현행 규정 및 관련 참조 등의 식별

- 2단계 : 모든 현행 RO 관련 IMO 지침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또한, 마셜아일랜드는 RO 코드의 구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 i) 다양한 형태의 RO에의 위임 및 RO의 승인과 위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접근방법이 존재함. 따라서, RO에 대한 검증, 인정, 위임 및 재승인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함

- ii) 주관청을 대행하여 협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위임 레벨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RO의 형태가 RO 코드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Type 1 : Res.A.739(18) 및 Res.A.789(19)에 적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기관으로 주관청이 인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예) 장비들이 IMO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관

- Type 2 : Res.A.739(18) 및 Res.A.789(19)에 적합하도록 요구되는 기관. 예) 선급

- Type 3 : 인정보안기관(Recognized Security Organizations(RSOs))와 같은 특정기관

- FSI 17/14/4 (몽고)

- RO 코드는 모든 RO 협정문 관련 IMO 문서들을 교체시킬 수 없을 것임. 이러한 관련 IMO 문서들은 특정한 협약의 특정한 의도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님. RO 코드는 그 완전성과 정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련 협약들과 상호 참조를 해야 될 것임. RO 코드는 협약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될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해당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발적 감사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구사항(RO 코드)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임

- 항만국 및 기국은 선박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상호 협조가 요구됨. 기국은 주요 결함 때문에 억류된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후의 합동 검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기준 미달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RO 코드는 PSC와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임

- 제안된 RO 코드는 강제/비강제 협약상 관련 RO 요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함

- RO의 최종 감독(감사)은 주관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제안된 RO 코드는 주관청에게 회원국들에 의해 동의되고 받아들여진 조화된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 출수 있을 것임
- FSI 17/14/5 (투발루, 키리바티)
  -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RO와 협정문을 체결하게 되는데, 국내 RO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RO 코드에 의해 기존의 국내법과의 저촉이 생길 수도 있음
  - RO 코드는 너무 규범적(prescriptive)일 수 있고 이는 원래 의도한 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ISO 기준에서 채택된 것처럼 과정기준(process-based)이 되어야 함
  - RO 코드가 발효된다면 결의서 A.996(25) '강제 IMO 협약 이행 코드'에 따른 주관청의 감독, 선택 및 감사는 무효가 될 수도 있음. 주관청은 감독, 선택 및 감사 과정에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주관청은 그들의 RO를 지정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만 함
  - 결의서 A.996(25)는 이미 기국이 RO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다양한 감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RO 코드의 채택은 RO와 주관청 모두에게 재정적, 물리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선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선박의 상태에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과 역류된 선박 또는 결함사항이 지적된 선박에 대한 항만국과 기국사이의 협조를 통해 기준미달선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선박과 인명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음. RO 코드는 이미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국제협약들의 과잉공급상태에 더 추가하는 것이 될 것임
- 의장은 제출된 상기 문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RO 코드 초안 개발 작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논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중점 사항들을 제안하였음
  - RO와 관련된 모든 IMO 요구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 RO 코드 개발을 위한 다음의 접근방법의 채택
    - i) RO의 사용 및 위임과 관련한 모든 현행 IMO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식별
    - ii) 상기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 iii) 적절하게 요구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영역의 식별을 위한 갭 분석(gap analysis) 수행하고, 추가 규정 또는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발
- 미국은 RO 코드 개발과 관련한 상기 의장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함. 하지만, EU Regulation과 RO 코드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EU Regulation의 Article 10 중 선급 증서의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관련 규정이 EU 등록선이 아닌 타 국적의 선박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동 사안에 대하여 EC 대표에게 확인을 요청함
  - 스웨덴은 Article 10은 RO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하여 논하지 말자고 제안함. 또한, EC 대표는 미국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Article 10은 non-EU 국가들의 주권 및 안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또한, EC 대표는 Article 10의 규정들을 RO코드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 것을 확인시켜 줌
- 여러 국가들은 RO 코드가 기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 또한, RO의 감사에 대한 책임은 주권국가에 있으며 이는 이미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RO의 감사는 동 작업 의제 하에서 논의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RO 코드 개발과 관련한 동 작업의제는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아국은 RO 코드 개발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으나, 동 코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동 코드가 개발되어 강제 감사제도 및 초국가적 감사 단체 등과 연결되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함
  - 많은 국가들은 RO 코드의 개발을 너무 서둘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갭 분석(gap analysis)을 통하여 현행 관련 규정에서 적절하게 요구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전문위원회는 RO 코드의 준비 및 RO 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같은 자세한 사항들은 갭 분석(gap analysis)이 이뤄지기 전인 현 상태에서는 논의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함
    - 전문위원회는 의장이 제안한 RO코드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동 작업 진행을 위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통신작업반 구성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전문위원회는 통신작업반의 구성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대신 사무국에게 RO의 위임과 관련한 IMO 관련 요구사항들 및 권고사항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기본 문서로 회원국들이 FSI 18에 동 문서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결정사항
- 사무국은 RO 관련 현행 IMO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식별하여 이를 통합한 하나의 문서를 FSI 18에 제출하기로 함
  - 회원국 및 관련 국제 기구들은 사무국이 제출하게 될 상기 문서에 대한 검토 후, 현행 관련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에 적절히 포함되지 못한 영역들을 식별하기 위한 갭 분석(gap analysis)을 시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FSI 18에 제출하기로 함